

(별표1) 재임용·승진임용·정년보장임용 심사기준

구분	재임용	승진임용	정년보장임용
대상	·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 · 임용기간 내 해당 학문분야별 최소 실적 기준에 도달한 교원 · 대학인사평가위원회 재임용 심사 평정에서 '적격' 판정을 받은 교원	· 직급별 최저 승진 소요 년한에 도달한 교원 · 직급별 체류 기간 내 해당 학문단위별 최소 실적 기준에 도달한 교원(직급별 최저 승진 소요 기간 초과시 최소 신청자격 기준은 누적 증가) · 대학인사평가위원회 및 교수승진심사위원회(교수 승진에 한함)의 승진임용 심사 평정에서 '적격' 판정을 받은 교원	· 부교수로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 · 임용기간 내 해당 학문단위별 최소 실적 기준에 도달한 교원 · 대학인사평가위원회 정년보장임용 심사 평정에서 '적격' 판정을 받은 교원
공통사항	· 국제특허등록 1건은 SCI 공저자 1편으로 대체 인정하며,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함 · 기술이전실적을 SCI 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,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함 · IF(Impact Factor)는 국제A급 논문에 한하여 논문 게재 당시 시점으로 적용하며, 세부사항은 따로 정함 · 교원인사규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용기간이 종료되는 교원의 재임용 심사기준은 임용 기간 만료 직전 최종 승진임용 심사기준으로 함		
기타	학문단위별 최소 신청자격 기준과 심사 가이드라인, 동료비교 평가 방식 등 재임용·승진임용·정년보장임용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함		